

고 발 장

1. 고 발 인

성 명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층 202호
전 화	02-599-4434

2. 피 고 발 인

성 명	김 오 수 (검찰총장)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성 명	이 정 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성 명	김 태 훈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제4차장검사 /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장)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성 명	박 은 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청장)
주 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범죄혐의 규명 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피고발인 김오수는 검찰총장으로서 최근 많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른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이하 ‘대장동 사건’ 이라 함)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하 ‘성남FC 사건’ 이라 함) 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및 성남FC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발인 이정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발인 김태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 사

건의 수사팀장이고, 피고발인 박은정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지청장으로서 성남FC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발인 김오수, 이정수, 김태훈은 공모공동하여,

2022. 2. 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대장동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함에 있어, 실무자인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 중에 있고, 지금까지 보도된 각종 언론기사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¹⁾과 최측근인 정진상²⁾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범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100여 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이재명과 정진상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면피성 조사를 하는 데 그치고, 정진상과 이재명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2. 피고발인 김오수, 박은정은 공모공동하여,

2022. 2. 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 성남FC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지금까지 보도된 각종 언론기사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네이버 등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1) 現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 現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위하여 2021. 6., 7. 경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는 것을 묵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현재까지 수사를 진척시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는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피고발인 김오수는 검찰총장으로서, 최근 많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른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및 성남FC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발인 이정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발인 김태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 사건의 수사팀장입니다.

피고발인 박은정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의 지청장으로서 성남FC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입니다.

2. 정진상의 배임가담 혐의

가. 정진상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의 최측근인 자이며(증 제1호증 JTBC 2022. 1. 4.자 보도³⁾),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당시부터 이재명 곁에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 이견을 보였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중도 사퇴하도록 압박하는 데에도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황무성이 사퇴한 뒤, 역시 이재명의 핵심 측근 중 한 사람인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설계하여 대장동

3) 위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또다른 오랜 핵심 측근인 유동규는 ‘자신은 측근이 아니다,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측근’ 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각종 특혜와 비리로 점철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증 제2호 증 조선일보 2022. 1. 10.자 사설, 증 제3호증 한겨레 2022. 1. 10.자 기사).

나. 또한 정진상은 그 스스로도 대장동개발계획 수립 및 인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출자 등 핵심안건의 주요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중간결재 역할을 맡아(최종결재는 이재명이 맡았음) 최소 9개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 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연합뉴스 2021. 12. 28.자 보도, 증 제5호증 조선일보 2021. 10. 16.자 기사).

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진상에 대한 은폐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한 2021. 9. 29. 당일 및 그 전날 정진상은 유동규와 8차례나 통화하였고, 유동규는 정진상과의 통화를 마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증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22. 1. 18.자 기사, 증 제7호증 연합뉴스 2021. 11. 4.자 기사, 증 제8호증 조선비즈 2022. 1. 4.자 기사). 즉, 당시 통화에서 정진상과 유동규 사이에 소위 “입 맞추기” 내지 증거인멸 등의 논의가 오고갔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분명합니다.

라. 그리고 최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2팀장이 유동규 등 5명에 대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을 찾아가서 대장동 관련 보고를 할 때 정진상도 참석하고 있었다’ 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증 제9호증 조선일보 2022. 1. 22.자 기사). 또한 성남시 관계자들은 정진상을 ‘(실질적인) 부

시장’ 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며,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에게 올라가는 모든 문서는 일단 정진상을 통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형식상의) 부시장은 허수아비였고 실질적 2인자는 정진상이었다’ 는 취지로까지 이야기 하었다고 합니다(증 제10호증 주간조선 2022. 1. 18.자 기사).

마. 이렇듯 정진상은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던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성남시 쪽의 소위 “윗선” 인 이재명의 배임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핵심인물입니다(증 제3호 증 한겨레 2022. 1. 10.자 기사).

3. 이재명의 배임가담 혐의

가. 이재명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대장동 사업을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데에 앞장선 자로서, 당시 선거를 통하여 성남시민들로부터 성남시정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이었기에 성남시 내지는 성남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로서 시정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명에게는 성남시 및 성남시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성남시가 출자한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성남시 및 성남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도 있었습니다.

나.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100% 출자자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사업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하관계에 있었습

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요, 방식 및 절차를 포함한 보고를 받고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내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로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재명의 결정 및 동의 없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은 수립 및 추진 자체가 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2012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제정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업무전결규정을 실시하여 최종전결권한이 이재명 앞으로 오게 하였으며, 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주요사무의 전결권한까지 이재명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증 제11호증 문화일보 2021. 10. 8.자 기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 따르면 사업 계획, 집행, 예산 및 결산, 기금조성, 자금차입, 정관변경, 경영평가 및 사업민간위탁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었던바(증 제12호증 비즈한국 2021. 11. 19.자 기사),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재권한이 이재명에게 있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 이재명이 직접 결재하였음이 드러난 서류는 10여 건 이상에 이르며, 2014. 1.경 대장동 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2016. 11.경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일일이 보고받고 승인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조선일보 2021. 10. 16.자 기사).

(표 삽입을 위한 공백)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관련 결재		
시기	주요 내용	주요 결재라인
2014년 1월 9일	대장동 구역 지정	정책실장 정진상, 부시장 이한규, 시장 이재명
2014년 1월 20일	주민의견 청취	부시장 이한규, 시장 이재명
2014년 12월 16일	대장동 개발계획	정책실장 정진상, 부시장 이한규, 시장 이재명
2014년 12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시장 이한규, 시장 이재명
2015년 2월 2일	출자승인	부시장 심기보, 시장 이재명
2015년 6월 9일	개발계획 수립	정책실장 정진상, 부시장 심기보, 시장 이재명
2015년 9월 15일	용역비 환수계획	정책실장 정진상, 부시장 심기보, 시장 이재명
2015년 9월 15일	도시개발사업 토지 세목	정책실장 출장, 부시장 심기보, 시장 이재명
2016년 2월 15일	구역·개발계획 변경안 입안	정책실장 출장, 부시장 심기보, 시장 이재명
2016년 11월 1일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정책실장 정진상, 부시장 김진홍, 시장 이재명

자료=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특히 이재명은 2015. 1.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하는 출자 승인 문건에 직접 결재서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사업방식, 사업성 및 사업목적 등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증 제13호증 중앙일보

2021. 9. 23.자 기사).

라.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은 1조 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부동산개발사업으로서, 2014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에 대한 최종결정권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대장동 사업을 ‘시장 임기 중 최대의 치적’ 이라고 자평한 바 있는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의 주요 골자와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직접 결재하며 진행하였을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즉,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정 민간사업자와 결탁하여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의도적으로 방임 내지는 포기한 것은 이재명의 지시나 공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 이재명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가. 이재명은 2014년 성남시장으로 재선되어 2015.에서 2017. 사이 성남FC 구단주도 맡고 있었는데, 2015.과 2016. 네이버 등 성남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위 네이버 등 후원기업들은 종전에는 성남FC에 그런 거액의 후원금을 낸 적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거액의 후원금을 낸 시기를 전후로 성남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고, 성남시장이자 후원금을 받은 성남FC 구단주는 이재명이었으므로, 이재

명이 성남FC로 하여금 성남시 관내 인허가 관련 기업들로부터 인허가를 대가로 광고비 명목의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사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5.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성립

가. 피고발인 김오수, 이정수, 김태훈은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유동규 등을 기히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하였으므로, 대장동 사건의 주 책임자인 정진상과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진상에 대하여서도 역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100일 이상이 지난 뒤에야 비공개로 형식적인 조사⁴⁾를 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의무”, “정치적중립” 등의 의무를 지며(헌법 제7조), 특히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과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합니다(동법 제257조).

4) 이 또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황무성 사퇴 압박의혹 사건을 위한 소환조사로 보이며, 대장동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라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행위가 국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면 직무유기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 피고발인 김오수, 이정수, 김태훈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직무집행상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인 피고발인들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도적인 방임 또는 포기”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 피고발인 김오수, 이정수, 김태훈은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 대유자산관리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규가 정진상과 통화한 후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하는 휴대전화는 주변 수색을 제대로 하지않아 찾지 못하였습니
다(증 제14호증 국민일보 2021. 9. 29.자 기사, 증 제15호증 조선비즈 2021. 9. 29.자 기사).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 은닉 등의 증거인멸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받고는 수사 착수 당일 바로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찾아내었습니다(증 제16호증 세계일보 2021. 10. 8.자 기사).

2) 성남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초동수사단계에서 당연히 요구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로부터 무려 2주 이상이 지나서야 성남시청을 이른바 “뒷북” 압수수색하였습니다(증 제17호증 연합뉴스 2021. 10. 15.자 기사).

3) 피고발인 김오수, 이정수, 김태훈은 정진상이 대선 일정 등으로 인하여 바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조사를 일방적으로 수 차례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증 제4호증 연합뉴스 2021. 12. 28.자 보도) 대장동 사건의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100일 이상이 지난 뒤에야, 그마저도 비공개로 정진상에 대한 최초 조사를 하였습니다(증 제18호증 조선일보 2022. 1. 17.자 기사).

이는 오히려 정진상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소위 말하는 노골적인 “박주기 수사” 내지는 “뒷북 수사”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진상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개입하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해당 건에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2. 2. 6.자로 완성되는바, 정진상에 대한 뒤늦은 수사는 이에 대한 피고발인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차원의 조사로 보입니다.

라. 피고발인 김오수, 이정수, 김태훈은 유동규, 김만배 등에 대하여서는 조사를 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정진상이나 이재명과 같이 실제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성남시 쪽 인사에 대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① 범죄혐의가 농후하고, ②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③ 핵심 증인 내지는 관계자들(유한기, 김문기 등)이 연이어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증 제19호증 한겨레 2021. 12. 10.자 기사, 증 제20호증 매일경제 2021. 12. 23.자 기사) 시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사에 미진한 채 제대로 된 조사 내지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 등을 하지 않고 있는⁵⁾ 이는 업무에 관한 태만 내지는 착각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⁶⁾ 의식적인 수사 방임 내지는 포기임이 명백합니다.

마. 또한 피고발인 김오수, 이정수, 김태훈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위와 같이 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들(유한기, 김문기 등)이 연달아 사망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② 피고발인들이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는 포기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국민들이 2달 여가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서도 대장동 사건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크나큰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지 100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야 겨우 정진상만을 면피성 조사를 하고 이재명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태만이나 착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의식적,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임 또는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6) 피고발인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었다는 이력 역시 이에 부합합니다(증 제21호증 조선일보 2021. 10. 15.자 기사).

바. 나아가 피고발인 김오수, 박은정은 이재명이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하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였음은 물론, 성남FC 사건 수사팀이 네이버 등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후원금의 성격과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등(증 제23호증 조선일보 2022. 1. 29.자 기사)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6. 조사의 필요성

피고발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다가오는 대선이 끝나게 될 경우, ①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하지는 못할 것이고, ② 설령 낙선되더라도 이미 낙선된 후보를 구태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수사 필요성 문제나 강압수사 내지 정치보복 문제⁷⁾로 인하여(증 제22호증 MBN 2022. 1. 22.자 기사) 수사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의 여부를 떠나 법적 “형평성” 이나 “정의” 관

7) 위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감옥에 갈 것 같다’ 라고 말한바, 낙선하게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소위 정치적인 보복 내지는 공작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년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바, 국민들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조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7. 핵심적인 수사요망사항

피고발인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하여 신속히 조사 일정 등에 관한 내부 보고서 및 결재서류와 내부 전산망 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정진상과 이재명, 성남FC와 후원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사가 방해를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수사의 방임 또는 포기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결어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진상은 과거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내부분서들에 직접 서명을 하였던 자이고, 이재명은 당시 관련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던바, 기히 공범으로 보이는 유동규 등에 대해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진행중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주된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정진상과 이재명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김오수, 이정수, 김태훈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팀이 꾸려진 뒤에도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진상과 이재명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거나 면피성 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사의 방임 또는 포기임이 밝혀지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되고, 또한 헌법상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성남시장이고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갑자기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 민원을 해결하였다는 의혹은 제3자 뇌물수수죄의 혐의가 농후하며, 이러한 의혹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오수와 박은정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후원금의 실체와 성격을 확인하려는 수사팀의 수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김오수의 경우 2019. 3. 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법무부 차관이던 2019. 9. 경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던 이성윤과 함께 당시 조국 일가의 여러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었으며, 2019. 10. 경에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윤규근 총경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려 수사를 방해하는 등 적법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특별히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수사를 멈추어버리고 방해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규명되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	JTBC 2022. 1. 4.자 보도
1. 증 제2호증	조선일보 2022. 1. 10.자 사설
1. 증 제3호증	한겨레 2022. 1. 10.자 기사
1. 증 제4호증	연합뉴스 2021. 12. 28.자 보도
1. 증 제5호증	조선일보 2021. 10. 16.자 기사
1. 증 제6호증	미디어오늘 2022. 1. 18.자 기사
1. 증 제7호증	연합뉴스 2021. 11. 4.자 기사
1. 증 제8호증	조선비즈 2022. 1. 4.자 기사
1. 증 제9호증	조선일보 2022. 1. 22.자 기사
1. 증 제10호증	주간조선 2022. 1. 18.자 기사
1. 증 제11호증	문화일보 2021. 10. 8.자 기사
1. 증 제12호증	비즈한국 2021. 11. 19.자 기사
1. 증 제13호증	중앙일보 2021. 9. 23.자 기사
1. 증 제14호증	국민일보 2021. 9. 29.자 기사
1. 증 제15호증	조선비즈 2021. 9. 29.자 기사
1. 증 제16호증	세계일보 2021. 10. 8.자 기사
1 증 제17호증	연합뉴스 2021. 10. 15.자 기사
1. 증 제18호증	조선일보 2022. 1. 17.자 기사
1. 증 제19호증	한겨레 2021. 12. 10.자 기사
1. 증 제20호증	매일경제 2021. 12. 23.자 기사

